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91 발 의 년 월 일:2023년 01월 27일 발 의 자:이민옥, 강동길, 김기덕

김동욱, 김성준, 김용일, 김원태, 김인제,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서준오, 성흠제, 소영철, 송재혁, 아이수루,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종복, 이병도,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정준호, 최민규, 최재란, 한 신 의원(34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현재 출자출연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경우에만 사전에그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검토 결과 공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현행 법령에서 포함하고 있는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
- 그러나 설립 및 운영 뿐만 아니라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갈등과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지방 정부의 장이 교체되는 경우, 출자출연기관 등의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평상시보다 더 큰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시에도 타당성 검토 및 결과의 공 개, 주민 의견 수렴 등 설립에 준하는 절차와 과정을 이행하도록 조 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시, 타당성 검토 및 결과의 공개와 검토 결과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등 설립 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2항에 따른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1. 통폐합을 하는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내역과 그 사유

- 2. 통폐합으로 인한 출자·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등의 변동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3.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4.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 께 게재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 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통폐합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조의2(출자・출연 기관 통폐
	합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시
	장은 출자·출연 기관을 통폐
	합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
	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2항에 따
	른 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
	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
	에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
	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
	<u>을</u> 수 있다.
	1. 통폐합을 하는 경우 출자
	·출연 기관의 지정을 해제하
	거나 변경 지정하는 내역과

그 사유

- 2. 통폐합으로 인한 출자・출
 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등의 변동이 시민생활에 미치
 는 영향
- 3.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4.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영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한다.
- 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

외에 출자·출연 기관의 통폐 합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